

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철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박 석, 서호연,
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」는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서울시 주요 정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, 과도한 경쟁 유발, 평가 기준의 모호성,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.
- 다만, 조례 폐지 시 자치구 간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.
- 이에 시행계획 수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,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,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 시 가능하도록 조정(안 제5조제1항)
- 나.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기한 변경(안 제5조제3항)
- 다.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 규정을 '심의 회 구성·운영 기간'으로 조정(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)
- 라.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에서 '즉시 차등 지원' 표현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(안 제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매년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매년 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말까지”를 “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,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즉시 차등 지원”을 “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동협력사업비는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 제9조”를 “공동

협력사업비는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 제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동협력사업비는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③ (생략)

----- 지원-----
-----.

② -----
---- 공동협력사업비는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 제9조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(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)를 검토¹⁾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행정국 자치행정과)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연간 정례적 운영비 소요 → 안전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] 서울시 관련부서(행정국 자치행정과)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어 향후 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 향후 공동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안전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함

⇒ 참고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연1회정도 개최된 바 있으며 예외적으로 안전이 많은 경우 2회 개최한 경우가 있음